

보세공장 설치·운영 특허(갱신) 시 첨부 서류

첨부서류	<p>1. 신규의 경우</p> <p>가. 사업계획서(공장 위치도 및 도면, 물품관리체계 포함)</p> <p>나.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(또는 승인서) 사본</p> <p>다. 임차계약서 사본(임차의 경우)</p> <p>라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(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) (※신설공장이 아닌 경우)</p> <p>마. 「전기사업법」 제63조,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증</p> <p>바. 임원(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)의 인적사항</p> <p>2. 갱신의 경우</p> <p>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. 단,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(갱신)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</p>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<p>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</p> <p>2. 국세납세증명</p> <p>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</p> <p>4. 운영인·임원(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)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</p> <p>5. 「소방시설공사법」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(※신설공장의 경우)</p> <p>※ 2부터 5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.</p>